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19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 · 유상범 · 엄태영

김도읍 · 송언석 · 이만희

최춘식 · 최형두 · 강기윤

구자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되, 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,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.

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 사유 등이 법률에 명 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고, 지정 취소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큰 변화 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,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"를 "평가기관의 지정기준"으로 한다.

-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
- 3.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 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 ① ~	제3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
	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	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
	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
	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
	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
	<u>은 경우</u>
	2.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
	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
	<u> 우</u>
	3.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
	하지 못하게 된 경우
	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
	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
	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
	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
	<u> 우</u>

### <신 설>

⑥ 제1항에 따른 <u>평가기관의</u>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, 평가기준, 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<u>⑦·⑧</u> (생 략)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⑦ 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
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
_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
실시하여야 한다.
<u> ⑧</u> <u>평가기관의</u>
<u>지정기준</u>
<u>⑨</u> ・ <u>⑩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과 같음)